



# In brief

발행일: 2025년 2월 25일

GX In brief INT2025-06

## 미래의 인식: IAS 37 개정안에 대한 간략한 검토

### Key points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제안했다.
- 이 개정안은 기업이 언제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어떻게 충당부채를 평가하는지를 명확화 한다.
- 또한 이 개정안은 충당부채 보고의 비교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여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장기 복구 의무가 있거나 부담금을 부담하는 기업에 큰 영향은 있을 것이다.

### 이슈가 무엇인가?

최근 몇 년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이해관계자로부터 IAS 37을 둘러싼 특정 적용 이슈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 이해관계자들은 복잡한 거래에 IAS 37 인식 기준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투자자들은 현재의 인식 지침이 일부 부담금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초래한다고 느꼈으며, 충당부채의 일부 측정 요구 사항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IAS 37 개정을 위한 공개조안: '충당부채 - 일부 개정'을 발표했다.

제안된 개정안은 IAS 37에 따라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기준을 통합하여, IFRIC 6, '특정 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채 : 폐전기·전자제품' 및 IFRIC 21 '부담금'을 대체한다.

주요 제안된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 구체적으로 과거 사건으로 생긴 현재 의무에 대한 요구 사항을 개선한다.
- 충당부채 측정을 위한 지침 변경,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이 충당부채 측정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명확히 하고, 장기 충당부채 측정을 위한 할인율 적용 기준을 개선한다.
- 이 제안된 개정을 반영하기 위해 IAS 37 도입과 관련된 지침을 업데이트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현재 이 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조회하고 있으며,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5년 3월 12일이다.

#### PwC observation

우리는 제안된 개정안으로 IAS 37의 명확성과 적용을 개선하기 위한 전반적인 목표를 지지하며, 대체로 이러한 개정안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이 개정안이 원칙 기반이며 많은 실질적인 적용 이슈와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잠재적인 영역을 다루고 있으며 재무제표 작성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제안에 대한 PwC의 견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의 의견서(comment letter)를 참조하십시오.

## 어떤 영향이 있으며, 누구에게 미치는가?

IAS 37에 대한 제안된 개정안은 일반적으로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업이 충당부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부담금을 부담하거나 유의적인 장기 충당부채를 가진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부담금은 예를 들어 정부가 간접적으로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메커니즘으로 또는 기업이 특정 기후 관련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등 여러 형태로 부과될 수 있다.

### 인식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개념체계의 원칙과 정의를 반영하여 현재 의무에 대한 인식 기준을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공개조안은 현재 의무 인식 기준을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나눈다.

#### (1) 기업에 의무가 있는가?

제안된 지침에 따르면, (a) 법적구조 또는 의제 구조(mechanism)가 기업에 책임을 부과하고, (b) 기업은 다른 당사자에게 그 책임을 지며, (c) 기업이 그 책임의 이행을 회피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이 없는 경우 기업은 의무가 있다.

#### (2)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의무가 있는가?

제안에서 경제적 자원의 이전은, 기업에 불리한 교환조건이 아니면 자원의 교환과 동일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다. 예를 들어,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이 아니라면, 공급자로부터 상품을 받기 위해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자원의 교환이며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의무가 아니다.

#### (3) 현재 의무가 과거 사건의 결과인가?

이는 주요 변경 사항 중 하나이다. 제안에서 기업이 (a) 효익을 얻거나, (b) (1)에서 논의한 요구 사항을 촉발하는 행위를 할 때 과거 사건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기간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데, 기업이 기간에 걸쳐 효익을 얻거나, 기간에 걸쳐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변경으로 인해 일부 충당부채는 더 일찍 또는 점진적으로 인식되어 이해관계자에게 더 적시성 있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특히 부담금 및 임계치를 초과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기업에 특히 관련이 있다.

### PwC observation

기업이 책임 이행을 회피할 수 있는 실제 능력 평가

우리는 기업이 책임 이행을 회피할 수 있는 실제 능력에 대한 공개초안이 보다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의무 조건에서 적발 위험이 어떻게 고려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적발 위험이 IAS 37에서 부채 인식에는 고려되지 않아야 하고, 부채 측정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경제적 결과가 법적 및 의제 의무 모두의 식별에서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의견서([comment letter](#))에서 이 공개초안의 수정 권고안을 제공합니다.

### 과거 사건 요건

개념에는 동의하지만, 현재의 공개초안이 혼란스럽고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견서([comment letter](#))에서는 관련 행위가 의무를 촉발하는지 여부에 대해 중립적인 적용하기 더 명확한 단일 원칙으로 문단을 재작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요구 사항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원칙이 다양한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세 가지 예를 제시합니다.

### 측정 - 할인율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장기 충당부채를 할인할 때 '채무불이행 위험'을 제외한 무위험 이자율을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채무불이행 위험은 기업이 충당부채를 이행하지 못할 기업 고유의 신용 위험을 나타내기 위해 할인율에 추가되는 프리미엄이다. 관련 추가 공시사항도 요구된다. 할인율에서 채무불이행 위험을 제거하면 일부 충당부채가 커질 것이다. 이 제안된 변경은 기업들이 사용하는 할인율을 표준화하여 비교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에너지, 석유 및 가스, 광업 및 통신 분야와 같은 중요한 장기 원상복구 충당부채가 있는 기업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 PwC observation

우리는 채무불이행위험을 제외한 할인율로 충당부채를 할인하는 측정 목표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기업이 제 3자에게 의무 이행 책임을 맡기는 것보다 직접 의무를 이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직접 관찰 가능한 무위험 이자율이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기업은 적절한 무위험 이자율을 추정하는 데 있어 지속적인 판단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IAS 19(종업원급여)의 기준과 유사한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이러한 다양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우량

회사채 또는 국채의 시장 수익률을 기반으로 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장기 충당부채를 할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비용-효익 방안이라고 권장합니다.

### 측정 – 포함해야 하는 원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충당부채 측정에 포함해야 하는 원가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드는 증분원가와 그 밖의 원가 배분액이 포함하는 것을 명확히 하도록 제안한다. 이 변경으로 인해, 더 많은 원가가 충당부채의 측정에 포함될 것이므로 일부 충당부채는 더 커질 것이다. 예를 들어, 소송 충당부채에는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금액뿐만 아니라 내부 법무 부서의 급여도 원가 배분액도 포함될 수 있다. 이는 기업들이 충당부채와 식별된 손실부담 계약을 측정할 때 고려하는 원가에 일관된 측정 접근 방식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 PwC observation

우리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충당부채 측정에 포함될 원가에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미래에 조달해야 할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명시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법적 사건과 직접 관련된 예상 미래 법률 비용이 충당부채 측정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현재 실무적으로 다양한 관행이 있음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것 모두 개념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두 가지 접근 방식 중 어느 것을 따라야 할지를 결정함으로써 실무의 다양성을 없앨 수 있습니다.

## 향후 일정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공개 초안의 제안에 대한 의견서와 기타 피드백을 조회할 것입니다. 제안(또는 일부 수정된 형태)이 발행되면, 우리는 제안이 2027년 이전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 더 많은 정보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제안에 대한 PwC의 견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의 의견서([comment letter](#))를 참조.

PwC는 IASB의 제·개정 프로젝트를 요약하여 전달하는 'In brief'와 상세한 실무적용이슈를 다루는 'In depth'를 통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최근 제·개정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 자료는 이를 번역한 것으로서 각 사례는 결정 시점 당시 유효한 국제회계기준서를 기초로 작성되어 그 이후의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자료는 우리나라 감독기관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구체적인 회계처리 판단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2025 Samil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http://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